

제4장

통계응답부담 측정 방안 연구

이 은 정

제1절 서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통계기관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응답자들(respondents)은 국가통계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국가통계조사를 위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시간과 정신적 능력을 소비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reward)도 없고, 통계가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응답부담(response burden) 경감 요구는 더 이상 불평이 아닌, 정부에 대한 요청이다. 응답부담은 최근에 사업체통계 정보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많아짐에 따라 사업체를 중심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90년대 이후 기업들의 응답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많은 선진국의 국가통계기관에서는 응답부담 측정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체의 행정부담¹⁾(administrative burden)은 통계기관에서 수행되는 사업체조사의 조사표 기입을 포함한다. 최근 사업체의 행정부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행정부담에 대한 관심이 세

1) 행정부담은 정부규제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계 각국의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은 정부와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행정조사나 보고요청 등에 대해 그 시간이나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여 중복되는 조사를 통폐합하거나 불필요한 조사는 없애는 등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한편, 통계학자들은 응답부담과 통계품질(data quality)의 역상관관계를 가정하며 응답부담을 줄이는 것이 단지 응답자들만의 관심이 아니라고 언급한다.²⁾

응답부담지표는 응답부담에 관하여 양적(quantitative)이고 객관적인(objective) 지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응답부담의 변화를 시계열 자료로 살펴보아야 한다(Rainer, 2004). 이러한 응답부담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국가통계기관은 통계조사를 개선하고 재편성하여 응답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응답부담지표는 응답부담이 평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통계기관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들의 행정부담 비용감축을 위해 전면적인 행정부담조사 및 이에 따른 부담감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기업체에 대한 소규모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기로 했다.³⁾ 이와 함께 행정부담의 일부 요소인 통계응답부담에 관한 측정을 통해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통계 응답부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느끼는 응답부담의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응답부담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국내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체의 행정부담을 측정한 사례로는 2006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제조업이 겪고 있는 경영외적 부담실태를 파악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270개 중

2)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면 응답률은 높아질 것이고, 결국 조사의 품질이 향상되고 자료 수집 비용은 절감될 것이라는 점을 통계학자들은 강조하고, 응답부담의 크기와 응답부담지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Koeijers & Willeboordse, 1995).

3) 2006년 11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의함.

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경영외적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자료가 있다. 한편,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도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통계응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응답부담 정도만을 파악하는 주관적인 응답부담에 관한 측정에 불과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신규 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정보 요구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응답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기업들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사업체를 중심으로 응답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계응답부담 측정 방법에 관한 초기연구로서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응답부담 측정이 응답자의 응답실태를 파악하여 주관적인 응답부담의 어느 정도만을 파악하였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시간을 통해 실질응답부담의 측정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좀 더 객관화된 응답부담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경험 있는 선진국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는 응답부담 측정에 관한 초기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응답부담의 개념적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문헌연구를 토대로 응답부담의 개념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② 현재 응답부담을 측정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응답부담 측정의 필요성과 응답부담 측정 방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③ 우리나라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측정 한 사례로서 통계청과 통계청 외의 기관에서 작성된 응답부담 실태현황과 그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사업체의 응답부담 정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④ 기존의 응답부담 측정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고 세밀한 응답부담 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직접 응답부담조사표를 설계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응답부담의 개념

응답부담의 개념은 실질응답부담(real response burden)과 인지응답부담(perceived response burde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실질응답부담은 원래 시간(time)과 비용(cost) 같은 양적인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사표 작성 시간과 조사 횟수에 의해 측정가능하며, 인지응답부담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인 부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와 실질 간의 구분은 좀 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실질부담과 좀 더 주관적이고 질적인 인지부담 사이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Willeboordse, 199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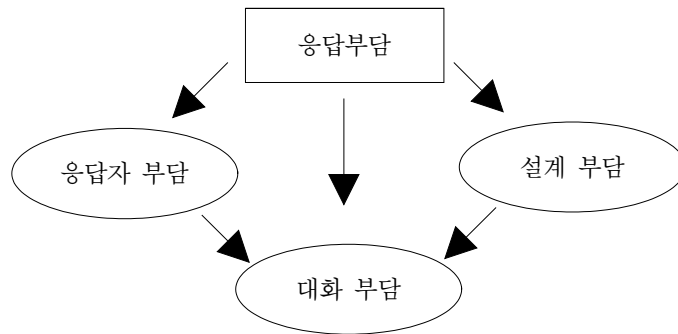
Bradburn(1978)은 시간으로 측정되는 응답부담의 경우, 응답자에게 요구되는 노력과 민감한 질문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담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인지응답부담의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인지응답부담의 구성 요인으로 조사 횟수(frequency of being surveyed), 조사 시간(length of survey), 요구되는 응답자의 노력(respondent effort)과 귀찮은 질문으로 인한 스트레스(stress of disturbing)라는 4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Willeboordse(1998a)는 응답부담을 응답자, 국가통계기관, 그리고 통계이용자(users of statistics)라는 좀 더 넓은 맥락으로 보고, 응답자와 이용자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국가통계기관은 이용자와 응답자의 요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답부담의 경감과 국가통계기관의 예산 절감, 그리고 통계결과의 양적이고 질적인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전략을 발전시키고 부담을 측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Fisher and Kydoniefs(2001)은 응답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적인 요소를 도식화하여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응답부담의 상세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그림 4-1). 그들은 응답부담을 응답자 부담(respondent

burden), 설계 부담(design burden), 그리고 대화 부담(interaction burden)으로 구분하였다.⁴⁾ 또한 그들에 의하면 응답자의 인지부담은 세 가지 요소 모두에서 영향을 받으며, 응답부담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추정(조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실질적인 시간)되는지와 응답자가 인지하는 부담 사이에는 구분이 있다고 한다. 이 구분을 통해 응답자가 갖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실질 부담과 좀 더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인지 부담의 관계를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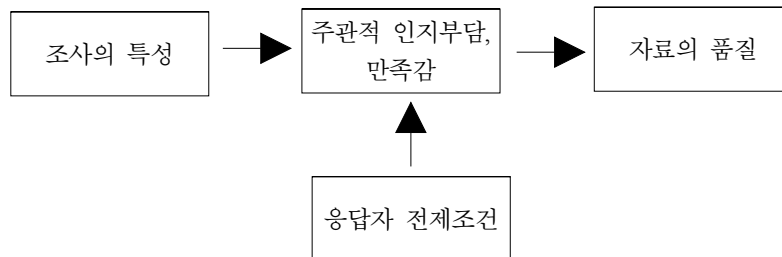
[그림 4-1] 응답부담 사이의 관계 모델(Fisher and Kydoniefs, 2001)



Haraldsen(2002)는 Fisher & Kydonief의 인지부담에 대한 개념을 “응답자의 응답능력과 조사의 설계와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요약하였다. 그는 응답자의 조사 주제에 대한 관심과 질문 응답에 필요한 응답자의 응답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모델을 발전시켰다(그림 4-2).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조사의 주제에 대한 관심과 응답능력은 날마다 변하는 것이 아닌 필수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조사의 설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림 4-2] 응답비용의 모델(Haraldsen, 2002)

- 4) 일반적으로 응답자부담은 조사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행동과 태도의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조사의 유용성에 관한 믿음 등과 같은 요인이며, 설계부담은 자료수집 방법, 조사의 내용 등 응답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사 환경에 의한 요인, 대화부담은 기억을 요구한다든지 민감한 질문항목 등으로 인한 요인을 의미한다.



Haraldsen(2002)은 응답부담 측정에 관한 두 가지의 가장 통상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응답자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 측정 방법은 부담이라고 인식되는 것의 어떤 분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위 또는 항목 무응답에 의한 것이지만, 이 방법은 응답부담보다 자료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araldsen의 관점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전통적인 측정방법의 문제점은 응답자가 느끼는 부담의 원인과 느낌 그 자체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Haraldsen(2002)은 ① 응답부담의 원인과 측정 ② 응답부담 ③ 응답 품질(quality) 사이에 혼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응답부담의 적절한 개념 정리를 위해서는 응답부담의 원인과 인지 부담, 그리고 응답 품질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부담은 조사표 작성을 위해 응답자가 소비한 총체적인 시간(실질응답부담)과 응답자에게 요구되는 노력 및 민감한 질문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담(인지응답부담)으로 정의하며, 이들 두 가지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응답부담을 상호보완적인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의 응답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응답부담 측정에 관한 해외사례

가. 응답부담 측정의 필요성에 관한 문헌연구

현대사회의 경영은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서는 수많은 주체의 수많은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다. Vries(1996)에 의하면 이렇게 유용하고 필수적인 자료 수집 행위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주게 된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소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을 들이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종종 의심한다.

사업체나 가구 등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행정부담, 응답부담, 지면부담 또는 조사표 작성 부담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행정부담은 최근 많은 국가에서 사업체 쪽으로, 특히 정치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의 응답부담은 전체 행정부담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응답부담을 감소시키라는 끊임없는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기관은 통계에 대한 응답부담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Vries, 1996). 통계응답부담 경감을 위한 이러한 발전들이 네덜란드 정부의 정치권에 의해 가속화됨으로써 네덜란드 통계청은 사업체에 대한 전체 행정부담을 1998년 이전까지 1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표본규모와 질문 항목을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행정자료이용과 전자 자료 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행정부담을 어떻게 하면 잘 측정할 수 있는지, 부담 측정과 부담 감축 중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통계의 효율성과 통계 응답부담 간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지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통계 응답부담의 측정과 필요성에 관한 토론은 이제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응답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행해

지고 있다(Rainer, 2004). 1995년 오스트리아가 EU의 회원국이 되고 난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응답부담에 관한 토론이 꽤 밀도 있게 진행되어 왔고,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응답부담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쪽으로 통계시스템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였다. 신 연방통계법 2000은 응답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통계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식통계에 대한 법령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응답부담을 정확히 측정하고 응답부담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통계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경제의회는 2001년 협동계약을 맺고, 응답부담의 진전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명 “응답부담지표(response burden barometer)”라 불리었고, 오스트리아 통계청과 연방정부 경제의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그룹은 그 시스템을 개발·수행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응답부담지표 워킹그룹은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였으며, 오스트리아 통계청이 조사 수행과 결과 산출에 책임을 졌다.

Staglin(2006)은 관료적인 번잡한 일의 감축을 토론하는 맥락으로 국가통계는 통계조사로 인해 부가되는 총체적인 부담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까지의 이용가능한 연구가 국가통계로부터 야기되는 응답부담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행정부담의 분야만 다루도록 의도되었음을 알고, 많은 응답부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가 공식통계로 인한 부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독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항상 매우 주관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지만, 국가 공식통계로 인한 응답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응답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2004년도의 독일 기업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식 통계조사에 대해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응답부담 측정방법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1) 독일

최근 응답부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독일 통계청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⁵⁾ 독일의 모든 통계시스템은 사업체 명부(business register)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기업이 어떤 통계조사에 응답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명부분석을 함으로써 모든 개별 기업체의 부담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다. 명부 평가는 공식통계에 응답하는 독일 사업체 중 규모가 10위 내에 드는 사업체에 대해서만 보여준다. 그러나 평가를 통해 특정한 지사(branches) 사업체에서 통계조사의 횟수가 높다는 사실과, 응답을 강요받는 독일 기업 중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사업체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큰 반면에 서비스업의 지사 사업체에서는 응답을 강요받는 비중이 훨씬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 규모에 따라 통계조사에 응답한 횟수들에서 차이가 나며, 응답 횟수의 분포가 고르지 않고 치우쳐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명부 분석은 부담에 관해서 가치 있는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명부 분석은 모든 사업체통계조사에 응답한 기업들 전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부담 연구에 비하여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참여하는 통계조사의 숫자만으로 부담이 크다 혹은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공식통계로 인해 야기되는 부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독일의 공식통계는 주된 사업체 협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특별한 조사 방법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독일의 응답부담 측정에 관한 연구는 모든 공식통계를 대상으로 보조 조사표를 사용하여 관련 공식통계와 직접 연계하여 수행된다. 모든 통계조사에 대해 부담에 관한 동일한 조사표를 사용하며, 응답부담에

5) Staglin, et al., *The Measurement of Response Burden Caused by Official Statistics in Germany*, 2006 참조.

관한 문항의 작성은 선택사항이다. 조사표 구조는 세 가지 정량적인 질문과 두 가지 정성적인 질문을 포함한 매우 간단한 것이며, 그 세 가지 정량적인 질문 중 첫째는 공식 통계조사의 조사표를 주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관한 것이며⁶⁾, 둘째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조사에 소비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셋째는 조사표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회계 시스템인지 아니면 계산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공식통계조사 각각에 대해 평균 응답시간의 양과 분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개별 통계조사의 복잡성에 대해 지표로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응답에 소비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비용을 측정하는 것에 비하면 간단하며, 그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답변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리 시간의 분산으로 기업이 관련 통계조사의 질문지를 응답하는 데 특별히 시간을 많이 소비했거나 적게 소비한 이상값을 찾아낼 수 있다. 특별한 상황으로 개인 응답부담이 특정한 양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상값은 응답이 정직하지 못하였거나 질문지를 처리하는 기관의 실수로 나타날 수 있다. 부담조사표에서 두 가지 정성적인 질문 항목은 공식통계조사의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와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거나 공식통계조사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어떤 제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이 두 가지 질문항목을 통해 기업들에게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게 하고 공식통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담조사 이후에는 보통 이상의 부담을 포함하는 통계, 응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 그리고 기업들에 의해 언급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행해질 것이다. 부담조사는 그래서 통계부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그리고 통계를 개선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면밀한 검토는 지면조사로 이루어지는 보조조사표를 사용하여 추가 인터뷰를 통하여 독립연구기관인 독일 경제연구소(DIW Berlin)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다. 이것은 공식통계에 역점을 둘 뿐만 아니라 비공식통

6) 응답 가능한 3가지 범주는 경영자(management), 전문직원(specialized staff), 외부직원(external persons)이다.

계(예를 들면, 경제협회, 신용협회, 금융연구소 등에 의한 조사)와 정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예를 들면, 기업 고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에 의한 부담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상대적인 통계부담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 때문에 기업이 참고 이겨내야 할 행정비용은 어떤 부분인지를 공식통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면조사에 의한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들은 그들이 공식통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이다. 즉, 기업들에게 그들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통계를 조사하는 목적은 기업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게다가, 기업들이 컨설턴트나 은행 또는 경제연구소에 대해 시장과 경쟁 상대의 분석 자료를 요구할 때 공식통계를 근거로 자료가 생산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간접적으로 공식통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부담조사의 목적은 공식통계조사의 부담을 시간과 비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식통계조사에서 사용되는 조사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함에 있다. 부담조사는 또한 어떠한 통계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형식과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응답부담지표라는 응답부담 측정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응답부담조사를 직접 수행, 지표를 산정하고 2004년에 결과를 공표하기도 하였으며, 지표는 라스파이레스 산식에 의하여 2001년을 기준연도로 지수화하기도 하였다. 오스트리아의 부담측정에 관한 연구 내용 중 다음은 Rainer(2004)가 공식통계의 품질과 방법론에 대해 유럽회의에 제출한 논문을 검토한 결과이다. 응답부담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연방통계법 2000의 필수사항 중 하나라고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대신에 표본조사가 수행되어야 함과 아울러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대신에 행정자료 이용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오스트리아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

다. 이렇게 응답부담에 대한 발전은 정치가, 응답자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통계청에도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실질응답부담의 크기를 조사하고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응답부담은 지면이든 전자든 각각의 조사표를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정의되고, 응답부담지표는 각 조사들의 총체적인 응답부담과 시간에 따른 평가 및 응답부담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응답부담지표는 한 시기의 한 조사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같은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모든 의무조사에 대해서 응답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표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다. 개별조사 및 전체 시간에 대한 응답부담지표 값은 기업의 규모와 본·지사 여부 및 조사가 전자 또는 전통적인 방법 이용 여부에 따라 고려되었다. 또한 응답부담지표 값은 전년도 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응답부담지표의 조사 대상으로는 광업, 제조업, 에너지와 상수도, 건설에 있어서의 생산과 사업순환 지표에 관한 월간조사와 구조적 사업통계에서의 연간조사, 건설사업체 통계에 대한 연간 보조 조사, 광업, 제조업, 에너지와 상수도 건설에 있어서의 연간 생산량 조사, Intrastat 조사, 도로운송조사, 2년 주기 연구와 실험개발 조사, 4년 주기 수입구조조사, 4년 주기 노동력조사였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의 응답부담지표는 농업과 어업관련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은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소비한 시간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다. 이러한 인터뷰는 각 조사의 작성 완료된 조사표가 보내졌을 때 바로 수행되었다. 이것은 응답자로부터 기억된 실질 응답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조사마다 다른 응답부담의 다양한 환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표본은 기업의 규모, 지점별 및 작성형태별(지면 또는 전자 형태)로 층화되었다. 응답부담조사가 추가적인 응답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조사표

대신 전화 인터뷰가 수행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응답부담조사를 위해 최소한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유럽통계시스템은 여전히 단계적으로 확정되고 있고 새로운 의무 통계들은 착수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통계들이 없어지거나 감소되지 않는 한 전체 응답부담은 피할 수 없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답부담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경험들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통계를 생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응답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응답부담 측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통계의 대부분은 EU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응답부담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좀 더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영국⁷⁾

응답자들은 조사 질문지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통계청 조사에 그들이 응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의회의 의원들에게 직접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 통계청은 응답자들이 사업체 조사 질문지를 완성하는 것을 부담스러운 업무로 여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각 조사가 응답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측정하게 되었다.

영국 통계청에서 발행된 조사표는 종종 응답자에게 조사표를 완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자유 의지에 의한 질문을 포함한다. 조사마다 질문의 문구는 다르지만 한 예는 다음과 같다(그림 4-3).

영국 통계청은 응답자가 질문지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적인 값을 나타내는 데 중앙값을 사용한다. 응답자에게 필요 이상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우송된 데이터를 좀 더 분명히 보충해 주길 요구함으로써 부과되는 추가적인 시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재접촉률(recontact rate)’이고 영국 통계청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응답부담 조사의 부담시간에 합산된다. 최종적인 부담시간은 응답자에 의한 전체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시간 부담률이 곱해진다. 시간 부담률은 조사표를 작성하는 사람의 지위(예: 과장, 선임, 중임, 후임, 서무 등급)에

7) Hedlin et al., “Developing Methods for Assessing Perceived Response Burden”, 2005에서 재인용.

[그림 4-3] 영국 통계청의 응답시간을 묻는 질문 항목 예

섹션 2에서 8까지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선택적임.	
(a) 시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hrs
(b) 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ins

따라 결정된다. 각 사업체의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유형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각 등급에 대한 시간 비용은 매년 영국 통계청의 새로운 소득조사를 사용함으로써 수정되고, 영국 통계청 사업체조사에서 전체비용은 조사되는 사업체의 개인별 유형에 의해 나타나는 비용의 합으로 산정된다.

4) 스웨덴⁸⁾

스웨덴 통계청의 사업체 조사는 최근까지 응답시간에 관한 질문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에 처음으로 사적 부문의 임금과 봉급(KLP), 생산·판매 등에 관한 월별 및 분기별 사업체 조사(KortInd), Intrastat이라는 3가지 사업체 조사의 정규 질문에 대한 응답시간에 관한 질문지가 추가되었다. 응답부담에 관한 질문은 과거에는 대부분 응답시간으로 한정하였지만, 2002년 Intrastat 조사 응답자들에게 응답 항목에 리커트 5점척도와 함께 “Intrastat을 작성하는 게 얼마나 쉬운가”라는 질문이 추가로 주어졌다. 이 질문의 목적은 시간에 의한 실질 응답부담의 추정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다.

응답부담에 관한 질문지는 왜 이 질문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추가적인 형태로 요구되었고, 사업체 조사의 질문지 작성 요령을 읽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질문지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되었다. 응답부담에 관한 추가 조사표는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8) Hedlin et al., “Developing Methods for Assessing Perceived Response Burden”, 2005에서 재인용.

사업체 조사와 함께 보내졌고, 응답자의 선택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무응답률이 기존 정기적 사업체 조사보다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면 KortInd 조사에서의 응답률이 83%인 반면, 그 조사의 응답부담 추가 질문지에 대한 응답률은 43%였다.

5) 핀란드⁹⁾

핀란드 통계청은 응답부담에는 응답 의무(response obligation), 응답의 짐(response load), 포함 확률(inclusion probability)이라는 세 가지 주된 부문을 포함하여 간주된다고 한다. 핀란드 통계청은 유한 모집단에 대한 통계 정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응답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체 조사에 대하여 이러한 정보의 요구가 최근에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핀란드의 응답부담 측정은 CATI를 이용한 인터뷰 피드백 시스템, 응답자 피드백 시스템, CATI 조사에서의 거부 피드백 같은 조사의 무응답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부담은 또한 인터뷰 시간, 조사표 길이, 패널 조사의 협조, 항목 무응답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지기도 한다. 핀란드 통계청은 응답부담에 대해서 응답자가 조사의 질문지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사업체 파일로부터 자료를 뽑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합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핀란드 통계청의 응답부담지표(RBI)는 조사표 완성을 위해 소비된 전체 시간이 조사표 작성 시간과 정보 수집 시간으로 나누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것은 사회조사의 데이터가 종종 CATI에 의해 수집되는 경우 의사소통 시간(communication time)에 대해서 응답자와 조사원 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측정되는 것과 일치되는 관점이다.

6) 호주¹⁰⁾

호주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의 조사표는 응답자가 조사표를 작성 완료하는 시간을 요구한다. 이 질문 항목은 아래(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호주 통계청의 응답시간을 묻는 질문 항목과 응답부담 산정 산식

9) I. Teikari, "Evening Out the Response Burden", 2002 참조.

10) Hedlin et al., Developing Methods for Assessing Perceived Response Burden, 2005에서 재인용.

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사항을 읽고, 질문에 착수하고 정보를 얻는 데 걸리는 실질적인 시간
- 자료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투
자한 직원 모두의 시간

hrs mins

이 조사표를 이용하여 응답부담을 산정하는 산식은

$$\text{응답부담} = \text{완료된 조사표 수} \times \text{조사표 완료 평균 시간}$$

각 해당 조사표를 완료한 평균 시간은 조사표 ‘완료시간(completion time)’에 대한 극단 이상값 조정을 참작한 모든 응답자의 평균값이며, 무응답률을 고려하여 평균 시간이 수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수치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호주 통계청은 사업체의 부담을 나타내기 위해 금전상의 수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보상요구의 가능성과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통계조정과는 호주 통계청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다른 국가 통계에 의해 사업체에 부과되는 부담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호주의 통계조정과는 조사표가 발송되기 전 조사의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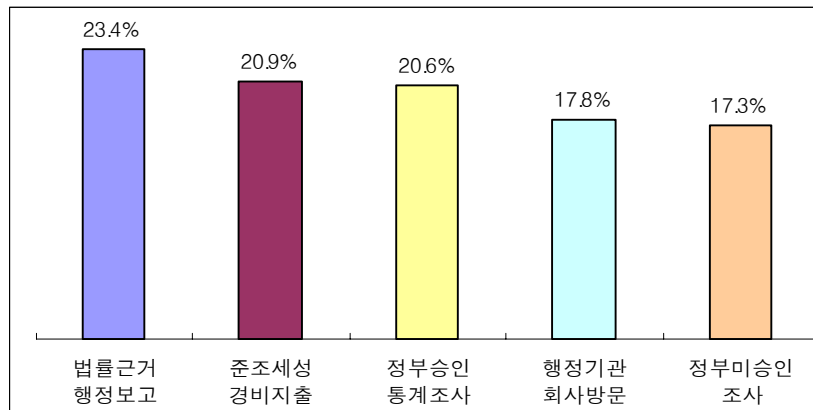
제3절 한국의 사업체 응답부담 실태 현황

1. 중소기업 경영외적 부담 실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외적 부담실태를 조사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 중소기업중앙회가 27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경영외적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경영외적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법률에 근거한 행정보고사항’(23.4%)이며, 다음으로는 ‘준조세성 경비지출’(20.9%), ‘정부승인통계조사’(20.6%), ‘행정기관의 회사방문’(17.8%), ‘정부미승인조사’(17.3%) 등의 순이다.

[그림 4-5] 중소기업의 경영외적 부담



주: 정부승인통계조사는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조사를 말하며, 정부미승인조사는 통계청 작성승인을 받지 않은 연구목적용 및 수시조사를 의미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05).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의 검토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30% 이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경영외적 부담정도를 검토해 보면, ‘법률에 근거한 행정보고 사항’이 기업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에서는 전체 조사응답기업의 39.7%(다소 큼 30.4%+매우 큼 9.3%)가 ‘부담이 크다’라고 응답한 반면, ‘부담이 작다’라는 응답은 20.0%로 나타나 행정 보고 사항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표 4-1> 경영외적 부담정도

(단위: %)

구분	매우작음	다소작음	보통	다소 큼	매우 큼
행정보고사항	5.2	14.8	40.4	30.4	9.3
정부승인통계조사	5.6	14.9	44.0	28.0	7.5
미승인통계조사	6.0	18.0	40.4	27.0	8.6
연구목적용 조사	7.8	15.7	40.3	27.6	8.6
행정기관의 회사방문	11.9	16.7	35.7	23.8	11.9

‘정부 승인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의 35.5%가 ‘부담이 크다’로 응답하였으며, ‘부담이 작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20.5%로 나타나 정부 승인 통계조사도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상 외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정부 승인 통계조사’의 경영외적 부담에서는 소기업(29.4%)보다는 중기업(40.9%)에서 응답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입안을 위한 수시조사(정부미승인)’에 대해서는 35.6%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고, 24.0%는 ‘부담이 작다’고 응답함으로써 정책입안을 위한 수시조사도 중소기업체의 경영외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기관의 연구목적용 조사(정부미승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의 36.2%(다소 큼 27.6%, 매우 큼 8.6%)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해 연구목적용 조사가 비교적 큰 경영외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많은 중소기업체가 행정보고사항 및 각종 통계조사로 인해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부담을 올바르게 조사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응답부담지표를 통하여 사업체 규모별 및 업종별로 부담이 되는 중복조사를 제한하고, 기업의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기존 행정통계 자료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2. 통계응답 실태조사

통계응답 실태조사는 통계작성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 등에서 실시한 통계조사(또는 통계보고)의 응답현황과 부담정도 및 요인을 파악하고, 부수적으로 미승인통계를 파악하여 필요한 사후 조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내용은 각종 통계조사의 응답횟수와 통계응답과 관련된 응답부담 정도 및 부담요인이다.

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 중 통계조사의 응답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표본 600개 사업체가 통계조사에 응답한 총 횟수는 19,307회로 사업체당 연평균 응답횟수는 32.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횟수는 사업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은 통계조사에 응답¹¹⁾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연평균 응답횟수가 45.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체 통계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뛰어난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체 조사의 표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4-2〉 연평균 통계응답횟수 현황

(단위: 회)

11) 사업체의 규모가 인지와 실질 응답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많은 나라에서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많은 종류의 사업체 조사에 응하지만, 요구하는 정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회계사원을 채용한다고 한다. 소규모 사업체 응답자들은 조사를 완수해서 보낼 능력이 부족하여 통계작성 업무를 담당할 회계사무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중규모 사업체는 많은 조사에 응하기는 하지만 조사표를 채울 능력이 있는 직원이 충분히 많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종류의 업무를 보조할 만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기계적인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중소기업의 전체 응답부담이 가중된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Jones & Rushbrooke, 2004). 스웨덴의 연구결과에서도 대규모 사업체 응답자들이 중소기업 응답자보다 응답과정을 보다 빠르고 쉽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이 짧은 기간 동안의 몇 가지 조사에 추출되지 않도록 표본을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Hedlin, 2005).

구분	합 계	20인 미만	20~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
횟수	32.2	17.1	22.6	31.4	45.0

2005년에 실시된 통계조사에 대해 느낀 업무부담 정도는 ‘부담이 된다’가 63.0%로 가장 높고, ‘감당할 만하다’는 32.0%,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부담이없다	감당할만하다	부담이 된다		
				소계	약간 부담	크게 부담
구성비	100.0	5.0	32.0	63.0	50.2	12.8

통계조사에서 업무 부담을 느낀 사업체의 부담사유로는 ‘각종 통계 조사가 너무 많음’이 24.7%로 가장 높고, 이어 ‘조사 항목이 너무 많거나 전문적임’이 12.7%, ‘자료유출의 우려가 있음’이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주요 부담사유

(단위: %)

구분	전체	통계조사가 너무 많음	조사항목이 너무 많음	조사자료의 유출 우려	자료구분이 되지 않음	조사개념의 파악 곤란	기 타
구성비	100.0	24.7	12.7	11.0	10.9	10.7	30.0

통계응답실태조사 결과, 사업체들이 각종 통계조사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측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양적인 지표로 실질응답부담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인지응답부담의 상호보완적인 지표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한국의 통계응답부담 측정방안 제시

1. 응답부담 측정을 위한 제안

인지응답부담과 실질응답부담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이미 앞 절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다. 인지응답부담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인 부담이고, 실질응답부담은 시간과 비용이라는 양적인 지표에 의해 측정가능한 부담이다. 인지응답부담의 요인들은 실질응답부담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사표가 잘 설계되어 있지 않고 조사항목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잘 설계되고 잘 정의된 조사표를 응답하는 응답자들보다 그렇지 못한 응답자들은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한편 조사표 작성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담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부담 또한 실질부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이고 세밀한 응답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지와 실질응답부담을 모두 측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지표로 사용되어야 함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그동안 인지응답부담 쪽으로 측정된 응답부담조사에 대해서 실질응답부담이 함께 측정되길 제안해 보고자 한다.

실질응답부담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조사표 작성을 위해 직접 소비한 시간뿐만 아니라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한 시간도 측정되어야 하며,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조사표 작성에 참여하였다면 그 사람들 모두의 시간이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하여야 할 응답부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들이 응답부담조사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측정된 실질응답부담은 조사별, 사업체 규모별, 지점여부 등에 따라 조사표 작성시간들을 구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요인별 응답부담 경감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응답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모든 조사가 의무조사이든 또는 자발적인 조사이든 간에 응답부담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자유의지에 의한 조사표 작성의 경우는 조

사표 작성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계기관으로부터 작성해야 할 통계조사는 대부분 의무통계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본 연구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통계응답부담의 측정 대상으로는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모든 사업체 의무통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통계응답부담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통계응답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사업체통계조사 개선을 위함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통계로만 한정하여 부담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모든 사업체통계조사에 대해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질문항목을 기존 조사표에 추가하여 응답자 자유의지에 의해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응답이 되기 때문에 부담측정 항목의 응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지만, 별도의 표본을 뽑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그리고 응답자들에게 추가적인 응답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할 만하다. 두 번째는 별도의 표본을 뽑아 보조조사표를 이용하여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체통계조사의 실사기간에 보조조사표를 함께 동봉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사업체통계조사표를 회수하는 즉시 조사표를 작성했던 직원과 전화조사를 통해 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응답부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본을 뽑아 조사를 실시할 때는 추가적인 응답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최소한의 표본이 추출되어야 한다.

실질응답부담 측정에 있어서 각 조사의 조사표 작성 시간을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전체 조사부담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사에 대해 응답부담을 시계열로 나타내는 것 또한 큰 관심거리이다.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응답부담을 측정하였다면 그 변화를 관찰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의 부담을 측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에 대한 부담은 시간에 걸쳐 변화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사업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방법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던 때보다 조사표 작성시간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응답시간이 줄고 그에 따

라 응답부담도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답부담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응답부담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응답부담조사가 매 시기에 계속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응답부담 측정이 정착된 후에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측정을 해서 응답부담 경감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응답부담조사표 설계

응답부담 측정을 위한 조사표는 아래와 같이 설계되었다. 조사표 구조는 응답부담조사로 인해 응답자들이 추가적인 응답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매우 간단하게 한 장으로 설계하였으며 질문 항목은 3가지 항목이다. 조사표 항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응답실태를 파악했던 조사표가 인지응답부담만을 측정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응답시간 항목을 추가 조사함으로써 실질응답부담까지 파악하여 응답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응답시간 측정을 위해 조사표 작성을 위해 소비한 시간을 조사하였는데, 이때 조사표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 시간 및 조사표 기입을 위해 실제 걸린 시간을 각각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응답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인지응답부담 측정을 위한 항목에 대해서는 리커트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응답부담을 느낀 응답자의 부담사유를 파악하여 통계조사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응답부담 사유는 중복 대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부담사유 중 응답해야 할 통계조사가 많아서 부담스러운 사업체에 대해서는 연 중 몇 회에 걸쳐 통계조사에 응하는지 그 횟수까지 기입하도록 하였고, 기타 부담을 느끼는 사유에 대해서 응답자가 자유롭게 부담사유를 적을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놓았다.

작성기관 : 통계청

본 조사표에 기재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통계 응답부담 조사표

관리번호 -

담당자ID -

- 이 조사표는 _____ 조사에서의 응답부담을 측정하여 응답부담 경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1.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소비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표를 기입한 직원 모두의 시간에 대해서 조사하여 주십시오.

1. 조사표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 시간 : 시간 분

2. 조사표 기입을 위해 실제 걸린 시간 : 시간 분

2.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통계조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질문 끝)

(3번으로)

3. 통계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 하십시오.

- 질문항목이 많고 복잡함 조사목적 및 내용이 불명확함
 조사가 많아서(연중 몇회 : _____) 조사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음
 조사 기한이 너무 촉박함
 기타 (_____)

사 업 체 명	응답 책임자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 -



통 계 청
www.nso.go.kr

제5절 결 론

최근 들어 각 나라의 국가통계기관을 중심으로 응답부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응답부담 측정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응답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사표 완성을 위해 응답자들이 소비한 시간을 통해 객관화된 응답부담이 측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신규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정보 요구로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응답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사업체 응답자들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응답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험 있는 선진국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였고, 새로운 응답부담조사표를 설계해 봄으로써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응답부담 측정을 위한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응답부담 측정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인 인지응답부담만을 파악하였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시간에 의한 실질응답부담을 함께 측정하여 응답부담지표로서 인지와 실질응답부담이 상호 보완적인 지표로 사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 응답시간 항목을 추가한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둘째, 응답부담조사의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사업체통계조사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통계응답부담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통계응답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사업체통계조사의 개선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계응답부담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모든 사업체통계조사에 대해서 응답부담 측정 질문 항목을 기존 조사표에 추가하여 응답자의 선택에 의해 응답부담을 측정하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별도의 표본을 뽑아 보조조사표를 이용하여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체통계조사의

실사기간에 보조조사표를 함께 동봉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존의 사업체통계조사표를 회수하는 즉시 조사표를 작성했던 직원과 전화조사로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넷째, 측정된 응답부담은 그 변화를 관찰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계열로 나타내어야 한다.

응답부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직접 조사표를 설계하였지만, 설계된 조사표로 실시하지 못한 예비조사와 통계청 이외 기관에서 작성되는 사업체통계조사에 대한 응답부담 측정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다.

참고문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6), "Reducing Respondent Burden -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Experience", Paper prepared for APEX @ meeting, Daejeon, Republic of Korea, September 2006.
- Bradburn, N.(1978), "Respondent Burden", *Health Survey Research Methods*, DHEW Publication No. (PHS) 79-3207, pp.49-53.
- Fisher, S. and L. Kydoniefs(2001), "Using a Theoretical Model of Response Burden to Identify Sources of Burden in Surveys", Paper presented at the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Household Survey Nonresponse. Oslo.
- Haraldsen, G.(2002), "Identifying and Reducing the Response Burden in Internet Business Survey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estionnaire Development, Evaluation and Testing Methods, Charleston, South Carolina, November 2002.
- Hedlin, D., T. Dale, G. Haraldsen, and J. Jones(2005), "Developing Methods for Assessing Perceived Response Burden", A joint report of Statistics Sweden, Statistics Norway and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Hedlin, D., Wahlstrom, H. Backstrom, and J. Erikson(2006), *An Experiment on Perceived Survey Response Burden among Businesses*.
- Jones, J. and J. Rushbrooke(2004), "Conceptualizing Total Business Survey Burden",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Conference on Quality and Methodology in Official Statistics(Q2004), Mainz, Germany, 24-26 May.
- Jones, J. & J. Rushbrooke, G. Haraldsen, T. Dale, and D. Hedlin(2005), *Conceptualizing Total Business Survey Burden*.

- Machin, A.(1998), *Reducing Statistical Burdens on Business: Developments in the United Kingdom*.
- Rainer, N.(2004), "Measuring response burden: The response burden barometer of statistics Austria",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Conference on Quality and Methodology in Official Statistics, Mainz, Germany, May 2004.
- Rainer, N.(2005), *Measuring Response Burden in a System of Total Quality Management*.
- Staglin, R., R. Gnos, R. Sturm(2006), *The Measurement of Response Burden Caused by Official Statistics in Germany*.
- Teikari, I.(2002), "Evening Out the Response Burden", Internal Report, Statistics Finland.
- Willem de Vries, W. Keller, and A. Willeboordse(1996), *Reducing the Response Burden: Some Developments in the Netherlands*.